

—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함으로써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구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고
- 도량동과 봉곡동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도량동 일부지역 ⇒ 봉곡동으로 편입(7필지 3,731㎡)
- 봉곡동 일부지역 ⇒ 도량동으로 편입(21필지 27,157㎡)

4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4조
-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('99.3.3 행정자치부령 제39호)
- 승인근거 : 경상북도 행정 13060-113(2003.12.17)호에 의거
행정구역 경계변경 승인

5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거 행정구역변경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, 지역여건이 변화된 도량동과 봉곡동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승인됨에 따라

- 택지개발 사업지구인 도량동 일부지역 7필지를 봉곡동으로 편입하고 봉곡동 일부지역 21필지를 도량동으로 편입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